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김예지 · 성일종
구자근 · 서지영 · 김은혜
박충권 · 신성범 · 김선교
박수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,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,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·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부대사업 관련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·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·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·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·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

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(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0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국유·공유재산을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·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유·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부대사업에 대한 지원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부대사업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 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 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 행자로 하여금 해당 국유·공 유재산을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 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 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·수 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 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